

의안번호	2126411
의 퇴 인	백종헌의원
회 답 일	2024. 2. 13.
추 계 번호	24C010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0억 8,400만원, 2029년 32억 3,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4억 3,000만원(연평균 30억 8,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의 설립·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3,084	2,942	3,036	3,134	3,234	15,430	3,086

주: 1.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본 추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2 신설 (식품안전예측 실시)	- 정부는 제4조제2항의 사전예방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식품안전 위해수준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식품안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제1항)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예측을 실시하기 위해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예측의 방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23조의3 신설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의 설립·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예측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둔다(제1항) -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1. 식품 위해요소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가공·분석·구축 - 2.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과 식품안전의 영향관계 등 조사·연구 - 3. 식품안전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위해에 관한 예보 지원 - 4. 식품안전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 5. 식품등의 위해예측·분석 등에 관한 국제협력 - 6. 그 밖에 식품안전예측 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업 ○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사람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함(제5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의2 신설 (식품안전예측 실시)	×	· 안 제23조의3에 따라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이 설립된 이후 그 인력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식품안전예측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향후 실시할 식품안전예측의 규모 등에 대한 추정이 곤란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 ※ 단, 식품안전예측 실시에 따른 사업비는 안 제23조의3에 따른 사업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2	안 제23조의3 신설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의 설립·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추계 · 향후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이 수행할 업무와 정부가 출연할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나, 본 추계에서는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임차료를 정부가 전액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명목임금상승률은 식품안전예측관리원 인건비 추계 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 추계 시 적용함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립·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임차료 전액을 정부가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본 추계에서는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임차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추계
 - － 개정안에 따른 식품안전예측관리원 설립·운영은 대통령 국정과제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농축수산물 안전성 데이터 통합·분석·활동 방안 연구」(식품안전정보원, 2022.12.) 등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인건비) 식품안전예측관리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총 34명(전문직 19명, 사무·기술직 15명)으로 예상되며, 본 추계에서는 2025년 첫 해에 34명을 모두 신규 배치하되, 해당 인력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식품 위해요소 데이터 및 정보 수집·가공·분석·구축, 환경적 요인과 식품안전의 영향관계 등 조사·연구, 식품안전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위해에 관한 예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2023.11.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명목임금상승률	3.4	3.2	3.2	3.2	3.2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2	2.2	2.1	2.1	2.1

행하기 위하여 전문직 19명, 사무·기술직 15명으로 총 34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함

- 직급별 구성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직급별 인건비는 직급체계가 유사한 기관들의 보수를 참고하여 작성

[표 2] 식품안전예측관리원 인력 구성(안)

(단위: 명, 천원)

직급		인원 수	1인당 인건비
전문직	수석연구위원	3	70,801
	연구위원	4	54,896
	부연구위원	5	49,477
	연구원	7	43,498
사무·기술직	관리위원	1	63,466
	수석관리원	2	52,184
	책임관리(기술)원	8	46,486
	관리(기술)원	4	41,446
합 계		34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 추계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직급별 1인당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표 3] 식품안전예측관리원 설립·운영에 따른 인건비(추정치):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직급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전문직	수석연구위원	226	234	241	249	257	1,207	241
	연구위원	234	241	249	257	265	1,247	249
	부연구위원	264	272	281	290	299	1,405	281
	연구원	324	335	346	357	368	1,730	346
사무·기술직	관리위원	68	70	72	74	77	361	72
	수석관리원	111	115	118	122	126	593	119
	책임관리(기술)원	396	409	422	436	450	2,112	422
	관리(기술)원	177	182	188	194	200	942	188
합 계		1,800	1,858	1,917	1,979	2,042	9,596	1,919

주: 향후 실제 인력 구성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제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사업비) 인건비에 유사사례인 식품안전정보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14.2%)과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중(43.2%)을 곱하여 산정²⁾

[표 4] 식품안전예측관리원 설립·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및 사업비(추정치):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기본경비	256	264	273	282	291	1,366	273
사업비	778	802	828	855	882	4,145	8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개정안 시행 첫 해인 2025년에만 발생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2020년 기준 589.2만원) 추정치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표 5] 식품안전예측관리원 설립·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추정치):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자산취득비	234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임차료) 신규 배치 인력 34명을 기준으로 필요공간(개인·공유 공간) 면적을 산출하여 단위면적당 사무실 임차료를 적용
- 필요공간 면적(324.02㎡)은 「업무시설 적정 공간면적 설계기준 개발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3.12.) 보고서에 따라 배치 인력 1인당 9.53㎡의 필요공간 면적(개인공간 2.99㎡, 공유공간 6.54㎡)을 적용
 - 임차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자료를 활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치한 충청북도 지역을 소재지로 가정하고 단위면적(㎡)당 사무실 평균 임차료를 적용
 - － 충청북도 지역의 단위면적(㎡)당 사무실 평균 임차료는 연간 51,600원(2023년 기준)으로,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2)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운영” 사업 예산 기준

[표 6] 식품안전예측관리원 설립·운영에 따른 임차료(추정치):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임차료	17	17	18	18	19	89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30억 8,400만원, 2029년 32억 3,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4억 3,000만원(연평균 30억 8,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인건비	1,800	1,858	1,917	1,979	2,042	9,596	1,919
기본경비	256	264	273	282	291	1,366	273
사업비	778	802	828	855	882	4,145	829
자산취득비	234	—	—	—	—	234	—
임차료	17	17	18	18	19	89	18
합 계	3,084	2,942	3,036	3,134	3,234	15,430	3,086

주: 1.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본 추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3.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으며, 향후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식품안전예측관리원 설립·운영은 대통령 국정과제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사업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축수산물 안전성 데이터 통합·분석·활동 방안 연구」(식품안전정보원, 2022.12.)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22.8.) 등의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음
 - 향후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이 수행할 업무와 정부가 출연할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나, 본 추계에서는 전액 정부가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임차료를 추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윤경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윤경	02-6788-4742	yoonklee@assembly.go.kr